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0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민홍철·허성무·김정호
신성범·정혜경·김태호
박지원·서영교·이훈기
전현희·추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거창·산청·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

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배상금은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하고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안 제8조).

다.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의료지원금과 관련자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

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마.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 받은 사람,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산청·함양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창·산청·함양사건으로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의료 및 생활 지원,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거창·산청·함양사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 및 유족 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유족의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배상금 등”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상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산청·함양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7조(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제6조에 따라 작성하거나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다)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형제자매

③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분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금) ①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의료지원금) ①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또는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배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배상금등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
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
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국가배상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 보호)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로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은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금과의 관계)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보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배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배상금등이 과오지급된 경우
3.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관련자 및 유족에게 거창·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관련자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배상금등 지급 관련 사무 취급 금지)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
2. 제24조를 위반하여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제25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관련자, 유족 결정 및 배상 등에 관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및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임무를 승계한다.